

의안번호	2202539
의 퇴 인	최은석 의원
회 답 일	2024.8.16.
추 계 번호	24G2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11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 →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5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110,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2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	
2	안 제71조의2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택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12억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12억원) 적용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3	안 제98조의9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 ②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분양주택 취득 ③ 해당 미분양주택이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12억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12억원) 적용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1조의2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98조의9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58조)

- 현재는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20%의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

□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개별 납세자의 기부 증가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약 650억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52.6만건
- 총 기부 건수의 83.8%(44.1만건)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하고 있어, 세액공제 한도 인상시 기부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나 이를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준공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등 감면 신설

□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1주택 및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 참고로 2024년 7월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4개 지역(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시 총 85개 지역이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지역에 해당

[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수	인구감소지역(총 89개)
부산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2024.02.27.)

-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1주택 및 과세특례 대상 신규 취득 주택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1주택의 주택 가액, 공시가격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며, 향후 주택 취득계획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은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어 과세특례 대상이 될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세제분석2과	고은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
고은비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